

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1998. 2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1. 폐지이유

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마포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% 달성시까지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1998년 1월 현재 마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3%로서 조례의 설치 목적을 달성 하였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함.

3. 폐지근거

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제2항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필요성 : 필요없음

첨부 :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진행중인 기금의 대여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